

창의미래융합대학원 내규

제정 2023. 7. 1.
개정 2024. 7. 1.
개정 2025. 7. 1.
개정 2026. 3. 1.
개정 2026. 5. 1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2조 1 6항에 의거하여 온라인 학위과정인 창의미래융합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한림대학교 창의미래융합대학원의 학사운영은 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.

제 3 조(학과 설치 및 입학정원) 창의미래융합대학원에 다음의 학과를 설치한다.

1. 디자인·디지털 인문예술학과
2. 디지털마케팅학과

구 분	입학정원		
	정원 내	정원 외	합계
디자인·디지털인문예술학과	15명	0	15명
디지털마케팅학과	15명	0	15명

제 4 조(수업 방법) ① 본 대학원의 수업은 고등교육법에 의거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원격수업의 충실한 진행을 위한 질 관리는 원격교육의 기획, 개발, 운영, 평가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·평가하며, 그 평가 결과를 재반영한다.

제 2 장 입 학

제 5 조 (입학시기) 입학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제 6 조(입학전형) ① 입학전형은 연 2회 이내에서 실시한다.

② 본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1. 입학지원서
2. 출신대학 성적증명서(전 학년 평점평균이 기재된 것)
3. 대학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기타 그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(단, 성적증명서에 졸업 여부가 있을 경우 성적증명서만 제출해도 됨)

4. 수학계획서
5. 재직 및 경력증명서(선택사항)

제 7 조(전형방법)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실시한다.

- ① 서류전형의 평가 항목은 지원자의 학부 전공 관련성, 학부 성적, 학업계획 충실도 등으로 구성한다.
- ② 면접전형은 지원자의 학문적 적성·인성, 수학계획 및 진로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.
- ③ 필요할 경우 면접전형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지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 8 조(전형기준) 입학전형은 아래의 항목별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.

1차 서류전형	2차 면접전형
- 출신대학 성적, 전공 관련성, 학업 계획 충실도 등을 종합적 정성적으로 평가	- 지원자의 일반교양, 전공의 이해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
<동점자 처리기준> ㉠ 면접점수가 높은자 ㉡ 면접점수가 같은 경우 전형위원들이 재심하여 결정하며, 재심방법은 상기 기준과 동일함.	

제 9 조(입학전형위원회) ①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을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를 둔다.

- ② 입학전형위원회는 본 대학원 학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입학전형위원회는 2인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
제 10 조(입학허가 및 등록)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공고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 하여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한다.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입학 및 졸업 이후에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 1.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
 2.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한 경우
 3.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·관리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 3 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

제 11 조 (수업연한) 수업연한은 1년 이상으로 한다.

제 12 조 (학기 및 세션) ① 수업운영은 1년 2학기 4세션(1학기 2세션, 2학기 2세션)으로 운영한다.

제 13 조 (수업일수) ① 교과목 수업일수는 세션 당 10주 이내로 운영하며,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세션별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.

제 14 조 (재학연한) 재학 연한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제 4 장 교과과정 및 학사관리

제 15 조(온라인학위과정 운영) ① 수업은 온라인으로 운영하며 1년 과정으로 운영한다.

② 학위 수여에 필요한 학점은 28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③ 학위청구논문은 졸업프로젝트보고서 등의 평가로 대체한다.

제 16 조(교과과정) ① 교과과정은 공통과목, 전공필수, 전공선택 과목으로 한다.

제 17 조(학점) 한 과목당 학점은 1~4학점이며, 세션당 최대 이수 학점은 9학점 이내로 한다. 단, 졸업프로젝트를 포함할 경우 10학점까지 가능하다.

제 18 조(개설과목) ① 최소인원 개설과목 인원은 3명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3명 미만의 개설과목은 필요에 따라 창의미래융합대학원장의 승인 후 개설할 수 있다.

② 원격수업의 동영상 콘텐츠는 3년까지만 활용할 수 있으며, 3년 초과 시 신규 개발하여야 한다.

제 19 조(교과목 담당교수) 교과목의 강의 및 실기를 담당하는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교내·외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
2.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
3. 각종 학술연구기관 및 전문기관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
4. 기타 창의미래융합대학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 20 조(등록) ① 정규등록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중에서 수강신청학점이 졸업프로젝트보고서 학점을 제외하고 3학점 이내인 학생은 등록금의 1/2, 4학점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정규등록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중에서 졸업프로젝트 학점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등록금액은 등록금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③ 학위과정의 수료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재학생의 신분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등록을 하여야 한다. 수료유예에 따른 등록금액은 등록금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
제 21 조(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) ①이 대학원의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한림대학교 교직원 장학금: 한림대학교 교직원 입학 시 입학금 및 각 학기 수업료를 감면한다. 세부 감면율은 <별표1>에 따른다.

제 5 장 외국어시험

제 22 조(외국어시험) 외국어 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.

제 6 장 종합시험

제 23 조(종합시험) ① 종합시험은 3세션 수업 종료 후에 시행한다.

② 종합시험 교과목은 개설과목 중에서 3과목을 학생이 학과장과 협의하여 선택한다.

제 24 조(응시자격)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기 이상의 정규 등록을 한 학생으로서 18 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직전까지의 총 평균 평점이 3.0 이상이어야 한다.

제 25 조(응시절차 및 방법)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 원서를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26 조(출제 및 평가) ① 시험출제 위원은 해당 학과 담당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창의미래융합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② 종합시험 배점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,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.

③ 불합격한 과목은 다음 학기나, 과정 수료 후 재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 응시 절차에 따른다.

제 7 장 졸업프로젝트보고서

제 27 조(졸업 프로젝트보고서)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 대체로 반드시 프로젝트보고서 결과물을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를 거쳐 통과하여야 한다.

② 졸업 프로젝트보고서는 전공 학습 내용을 응용한 프로젝트로 한다.

제 28 조(졸업프로젝트 신청 자격) 창의미래융합대학원 소속 재학생과 재심사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4세션 지정 기한 내에 ‘졸업프로젝트 작성 계획서’를 제출해야 한다. 졸업프로젝트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
제 29 조(평가위원회 구성) ① 졸업 프로젝트보고서의 졸업 인증 자격의 평가를 위해 “졸업 자격인증 평가위원회”를 구성한다.

② 분야별 평가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,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정한다.

③ 심사위원은 학과소속의 전임교수,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타 창의미래융합대학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.

제 30 조(졸업프로젝트 보고서 심사 기준) ① 졸업프로젝트 보고서는 난이도, 창의성, 완성도, 성실성, 기획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Pass/Fail로 평가한다.

② 졸업프로젝트에 대한 1차 평가는 지도교수가 하며, 2차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한다.

제 8 장 출석

제 31 조(출석) 출석에 관한 사항은 학칙 및 원격수업 운영지침 출석인정기준을 준용한다.

제 9 장 수료 및 학위 수여

제 32 조(수료) 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

② 수료가 인정된 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 33 조(수료학점) 본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28학점 이상으로 한다.

제 34 조(학위 수여) 대학원장의 제청에 따라 총장은 학위 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. 단, 전문분야를 표기하여 수여한다.

제 35 조(학위 수여의 취소)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 10 장 내규 개정

제 36 조(학칙의 개정) ① 창의미래융합대학원장은 이 내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창의미래융합대학원 학사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 대학원위원회에 개정을 심의 요청한다.

② 내규 개정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본교 제 규정 관리 규정에 따른다.

제 11 장 보칙

제 37 조(세부사항) ① 이 내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별표1. 한림대학교 교직원 장학금 등록금 감면율

기관	대상	감면율	비고
대학교	정규직원	70%	일 8시간 이상 또는 월 209시간 이상 근무자 대상
	기금직원		
	특수목적사업직원		
	임시직원		
산단	직원	70%	일 8시간 이상 또는 월 209시간 이상 근무자 대상
	기간제직원		
	전담사업직원		

부 칙

- ① 이 내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이 변경 내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③ (졸업프로젝트 신청 자격) 이 변경 내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④ (원격수업 콘텐츠 활용기간 조항) 이 변경 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⑤ (학점, 졸업프로젝트 신청 자격 조항) 이 변경 내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